

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01호 1999. 7. 1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되며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의 가입자만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주택이 국민주택으로 되면, 기존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로서는 이러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 모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국민주택등”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분양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국민주택 등”을 각각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 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제1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가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저축등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예치금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전에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국민주택등”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민주택분양(임대)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공급신청서”로, “국민주택분양(임

대)을 신청합니다.”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분양을(임대를) 신청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 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주 택 위 치	(시·구·동)	주택형	아파트 연 립 단 독	면 적	공용포함 : 전 용 :
위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임대)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한글)		(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청일 : . . .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저축	순 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납입회수
청약예금 (청약부금)	순 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납입회수
※ 위와 같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국주택은행			지점 ㉠		

<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시오.
2. 신청인은 거래인감으로 날인하거나 서명하십시오.

30304-27511민
'99. 6. 2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주택회보